

군포도시공사 제7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정관」 일부개정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1년 12월 10일

군포도시공사 정관 제5호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(직원의 임면)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이 현 동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성 용 현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황 기 성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14조(직원의 임면) ① <생략>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업무의 성격·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	제14조(직원의 임면) ① <현행과 같음>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	